

의안번호	2215202
의 퇴 인	복기왕의원
회 답 일	2026. 1. 9.
추계번호	25B68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84조의2(시정명령)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함 1.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터미널사업자가 사용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터미널사업자가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49조의3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49조의10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의무규정
3	안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u><삭 제> 5.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u>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삭 제> 2.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13. 제42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에 대한 벌칙은 삭제 <삭 제> 14.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삭 제> 15. 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7. 제84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무규정
5	안 제9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항) <신 설> 1의2. 제10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2항 단서(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9조의3제6항 단서 또는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4조의2(시정명령) 신설	
3	안 제91조(벌칙)	
4	안 제92조(벌칙)	
5	안 제94조(과태료)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 하여금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한 후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
 - 또한, 개정안은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

[표 1]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제재수단

구 분	현행	개정안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¹⁾ 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약관을 변경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²⁾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한 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³⁾ 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제38조제4항 ⁴⁾ 에 따른 시설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40조제1항 ⁵⁾ 을 위반하여 터미널사업자가 사용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1항 ⁶⁾ 을 위반하여 터미널사업자가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제49조의3제6항 본문 ⁷⁾ 을 위반하여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제49조의10제2항 본문 ⁸⁾ 을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u>제10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2항 단서(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9조의3제6항 단서 또는 제49조의10제2항 단서³⁾⁷⁾⁸⁾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u>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²⁾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u>제34조의2제1항⁹⁾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u>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¹⁰⁾	

자료: 현행법 및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 제9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을 변경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제재수단 변경에 따른 위반행위의 증감, 과태료의 부과금액 등을 예측할 수 없고,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¹¹⁾,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감소 및 과태료 수입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 2)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1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
 14.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5. 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 3)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4)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제40조(사용약관) ①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6) 제41조(시설 사용료) ①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7)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⑥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8)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②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9)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 10)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 11)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형법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의 수입이 되나, 형벌 규정에 따른 벌금 수입을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